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안전산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2).
-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확대함과 동시에 요건을 완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 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51조·제52조 및 제53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명령 요건을 완화하여, 중대재해에 이르지 아니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신체 등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 및 주체를 확대하고,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건설공사 기간 연장요청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함(안 제70조 및 제72조).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범위를 종전의 연구·개발 목적 제조·수입과 수출 목적 제조에서 수출 목적 수입까지 확대함(안 제84조).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8조의2).
-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한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의 등록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59조 및 제161조의2).

II. 검토의견

1. 안전한일터위원회 관련(안 제7조의2)

개정안은 종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1)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항”을 분리하여 고용노동부에 신설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에서 그 심의·조정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문위원회에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없음²⁾을 근거로 자문위원회인 안전한일터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³⁾

고용노동부는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해당 내용을 주서에 반영하였음.

개 정 안	수정의견
제7조의2(안전한일터위원회) ① ~ ④ (생략) ⑤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한 사무국을 둔다. ⑥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조직·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안전한일터위원회) ① ~ ④ (생략) <삭제> ⑤ 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위원회의 사무기구 등) ① 행정위원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자문위원회등에는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常勤)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사무 지원을 하기 곤란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Ⅲ. 관계기관 의견

개정안에 대하여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상당 부분이 건설공사 등을 최초로 도급받은 도급인(원청)이 지출하는 공통비용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하도급업체에 지급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를 실제 사용항목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전문위원 이 세 진)